

	교원인사 규정	문서번호	3-2-1		
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개정일	2022. 08. 31.		
		페이지	1/11	관리 부서	교무처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의담학회정관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.)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거 서울여자간호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.) 교원에 관한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임용계약 및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2. 11. 01.>

제2조(교원의 구분) ① 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 및 강사로 구분한다.

② 전임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.

③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직위는 교수, 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. <개정 2012. 7. 23.>

④ 비전임교원은 겸임교수, 초빙교수, 명예교수, 석좌교수 등으로 한다.

제3조(교원의 자격) 교원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제 16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본 대학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능력과 실증을 가진 자라야 한다.

제4조(적용범위) ① 이 규정은 본 대학 전임교원(이하 “교원”이라 한다.)에게 적용한다.

② 비전임교원, 강사 등 의 임용과 위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5조(교원의 정년) 총장 외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로 한다.

제6조(교원업적평가) ① 교원은 매년 교원업적평가(이하“업적평가”라 한다.)를 받아야 한다.

② 업적평가는 교육, 연구, 봉사 및 기타 분야 등에 대하여 평가하며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(이하 ‘재임용’이라 한다) 등에 적용한다. <개정 2012. 10. 01.>

③ 업적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.

제7조(연구실적) 교원이 신규임용, 승진임용, 재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는 본 대학의 『전임교원임용시행세칙』에 의한다.

제8조(교원인사위원회) ① 교원의 임면, 승진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(이하‘인사위원회’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한다.

②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관계 규정을 근거로 하여 따로 정한다.

	교원인사 규정	문서번호		3-2-1	
		제정일		2010. 03. 01.	
		개정일		2022. 08. 31.	
		페이지	2/11	관리 부서	교무처

제2장 임 용

제1절 임용기준

제9조(임용원칙) ① 교원의 임용은 신규임용, 승진임용, 재임용, 계약제 임용, 겸임, 파견, 휴직, 직위해제, 정직, 복직, 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.

② 교원의 신규임용, 재임용, 승진임용 등은 제20조에 따라 임면권자와 당해 본인과의 계약으로 결정하며, 근무기간, 보수, 근무조건,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. 단,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정 및 『전임교원임용시행세칙』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
③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.

④ 교원을 재임용 또는 승진임용 할 때는 업적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재임용, 승진임용 별로 업적평가의 반영을 다르게 한다.

⑥ 제2항의 각 임용별 심사에 대한 기준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0조(임용절차) ① 교원의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.

② 교원임용의 합리적인 심사 관리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제20조에 규정에 의한 임용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조건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④ 교원임용계약 해당자는 교원의 임용을 위한 심사 및 인사관리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관련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(임용시기) ① 임용 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1일로 한다. 부득이한 경우는 수시로 임용할 수 있다.

② 교원은 임용장, 임용통지서 또는 위촉장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익일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.

제12조(임용기간) ① 본 대학의 임용기간은 다음의 각 호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.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다.

1. 교수 : 정년까지의 기간
2. 부교수 : 6년
3. 조교수 : 7년

	교원인사 규정	문서번호	3-2-1		
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개정일	2022. 08. 31.		
		페이지	3/11	관리 부서	교무처

② 임용기간 계산은 본 대학교의 임용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며, 학기 도중 만료 시는 그 학기의 말일을 근무기간 만료일로 한다.

제13조(경력연수 계산) ① 경력 산정은 공무원법 기준에 준용하며 동일기간 내에 2개 이상의 기관에서 교육과 연구에 종사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1개 기관에서의 경력만을 계산한다.

② 박사학위 취득 후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대학에 근무한 경우는 전체 근무기간의 60%~80%를 인정한다.
2. 전문대학에 근무한 경우는 전체 근무기간의 30%~50%를 인정한다.
3. 위 1, 2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4조(정년보장교원 임용) ① 정년까지의 임용교원에 대하여는 정관 40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의의 심사를 거친다.

② 1항의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에 관한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5조(외국인 교원) 대학은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제16조(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.

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
4. 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5. 병역의무를 기피한자
6.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
7.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8.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
② 제 1항 이외에 교원으로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하지 아니한다.

제17조(신원조사) 교원을 신규임용, 재임용, 승진임용 할 때에는 임용 전에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.

	교원인사 규정	문서번호	3-2-1		
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개정일	2022. 08. 31.		
		페이지	4/11	관리 부서	교무처

제 2절 신규임용

제18조(자격) ① 본 대학의 교원은 『교육공무원법』, 『사립학교법』 및 『학교법인 의담 학원 정관』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박사학위 소지자
2. 관련 산업체기관 근무경력자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당해 분야의 실무실적이 월등하여 제1호에 상응할 만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예외로 한다.

제19조(신규임용 절차)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절차 및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.

제20조(신규임용계약 조건) 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.

1. 근무기간은 정관 제 40조의 6에 규정하는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.
2. 보수 : 업무의 곤란도, 업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
3. 근무조건 : 교수시간 및 대학이 요구하는 사항
4. 업적 및 성과 : 교육, 연구, 봉사 및 기타 등에 관한 사항
5. 재계약 조건 및 절차 : 근무기간 종료 후 재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3절 재임용

제21조(재임용 대상자) ① 재임용 대상자는 교원인사규정 제12조에 의한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계약이 필요한 교원이다.

② 임면권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항의 요건과 관계없이 재임용을 할 수 있다.

1. 부교수로서 정교수 승진 자격을 충족하였으나 정년보장교원의 정수 초과로 인하여 진급할 수 없을 때는 부교수로 재임용할 수 있으며, 그 년수에는 제한이 없다.

제22조(재임용 여부의 통보) ①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에게 임용계약기간 만료일 4월 이전에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
	교원인사 규정	문서번호		3-2-1	
		제정일		2010. 03. 01.	
		개정일		2022. 08. 31.	
		페이지	5/11	관리 부서	교무처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을 신청하도록 한다.

③ 총장은 제2항의 대상자에 대해 재임용절차의 심의를 거쳐 임용계약기간 만료일 2월 전 까지 당해 교원에게 재임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재계약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동 종료된 것으로 본다.

제23조(재임용 요건) ① 교원이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
1. 재임용소요 연수
2. 교수업적평가
3. 연구실적 : 100%
4. 기타 관계법령 준수 및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사항

② 재임용 요건의 교수업적평가와 연구실적 평가는 『전임교원임용시행세칙』에 따른다.

제24조(재임용 심사 및 절차) ① 재계약 대상교원은 재임용에 필요한 재임용신청서, 업적평가 및 연구실적과 구비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한다.

② 교무처장은 업적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재계약 대상교원의 재임용 심사를 평가한다.

③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대상교원의 재계약 여부를 심의한다.

④ 심의과정에서 재임용 탈락 대상교원에 대하여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기일에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⑤ 총장은 심의결과를 검토한 후 법인이사회에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.

⑥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『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』 제7조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제4절 승진임용

제25조(승진요건) ① 교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.

1. 승진소요 최저연수
2. 교수업적평가점수
3. 연구실적
4. 기타 관계법령 준수 및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사항

	교원인사 규정	문서번호	3-2-1		
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개정일	2022. 08. 31.		
		페이지	6/11	관리 부서	교무처

② 제1항의 승진임용 심사를 위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26조(승진소요 연수) ① 전임교원의 직급별 최저 승진소요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당해직급에서 해당하는 기간을 재직하여야 한다.

1. 부교수에서 교수 : 6년 이상
2. 조교수에서 부교수 : 7년 이상< 개정 2012년 7월 23일>

② 우리 대학 교원으로서 해외 연구기관 또는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연수, 강의 기간은 승진소요 년 수에 산입할 수 있다.

③ 승진 소요연수산정은 본 대학의 승진 전 직급으로 재직한 기간만을 산입한다. 제28조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제외한다.

제27조(승진임용의 절차) ① 승진임용 대상교원은 현 직위 임용 일부터 승진심사 직전까지의 『교원인사·임용심사세칙』에 의거한 업적평가와 연구실적 및 소정의 양식을 임용일 4월 전까지 교무처에 제출한다.

② 교무처장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 승진요건을 평가한 결과를 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

③ 총장은 심사결과를 검토한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사회에 해당 교원의 승진임용을 제청하여 의결한 후 이사장이 임명한다.

제28조(승진의 제한) ① 이 규정에서 정한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교원이라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 할 수 없다.

1. 징계의결 요구, 징계처분,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경우
2.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날부터 다음 각 항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

가. 감봉 : 6개월

나. 해직 : 12개월

다. 정직 : 18개월

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휴직의 경우는 승진 임용할 수 있다.

1. 병역법 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
2. 업무상 재해, 공무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
3.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되면서 발생한 휴직

	교원인사 규정	문서번호	3-2-1		
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개정일	2022. 08. 31.		
		페이지	7/11	관리 부서	교무처

제 3 장 복 무

제29조(복무) ① 교원은 교육, 연구, 봉사 산학협력, 학생지도 및 대학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.

② 정관 또는 이 장에 규정되지 않은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·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30조(재직 중 교원평가 등) ① 교원은 재직 중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업적평가를 포함하여 대학의 각종 평가규칙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의 평가 결과는 해당교원의 인사, 보수, 상벌에 적용하며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31조(보직수행 등) ① 총장은 대학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, 교원의 현재 직무 이외에 대학의 기구 조직표에 의한 보직 및 직무를 임명, 위촉 또는 겸임시킬 수 있으며, 그 임기는 규정에 따른다.

② 보직은 교무처장, 학생처장, 산학협력처장, 기획처장, 사무처장을 말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회수는 제한이 없다.

③ 보직은 제2조 2항의 전임교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학교운영상 필요할 때는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직원(임용기한의 정함이 없는 직원)을 보할 수 있다.

④ 총장이 유고 시 정관 제 94조에 의한 직무대행이 불가능할 경우는 교무처장, 학생처장, 산학협력처장, 기획처장 순으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2조(겸직제한) ① 교원은 타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임할 수 없다.

② 교원이 다른 학교에 출강하고자 할 때 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전임이 아닌 직을 위촉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③ 교원은 학사운영이나 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교외활동 또는 교외의 개인이나 단체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. 단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④ 기타 외국대학의 교원 등 겸직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른다.

제33조(파견 및 교육 훈련 등)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교원의 파견근무 및 국내·외 연수 등을 허가할 수 있다.

1. 교육기관, 교육행정기관, 연구기관, 산업체 등 또는 국가적 사업의 수행 및 업무수행이나

	교원인사 규정	문서번호	3-2-1		
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개정일	2022. 08. 31.		
		페이지	8/11	관리 부서	교무처

연수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2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제1항이 규정하는 파견에 있어서 국외에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교원은 필요시 방학 중 근무 장소를 교육공무원법 41조에 의하여 달리할 수 있다.

④ 전임교원의 학위과정 입학은 신규임용 후 2년 이내에는 불허한다.

제34조(해외여행) ① 교원이 강의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원할 때에는 출발 최소 7일 전까지 해외출국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강의기간 중의 해외여행은 학기별 10일 이내로 하되, 대학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락 한다.

제35조(병가) ① 교원이 질병 또는 상해로 병가를 신청할 경우 연간 60일까지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, 단, 의사진단서를 첨부한 병가신청서를 제출하고 60일을 초과하면 무급 휴직으로 처리한다.

② 병가기간 중의 교원에게 60일 까지는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.

제4장 신분보장

제36조(신분보장) ① 교원의 신분보장은 『학교법인 의담학원 정관』에 정한 바에 따른다.

② 교원은 형의 선고,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, 강임,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.

③ 정관 또는 이장에 규정되지 않은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국·공립대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37조(보수) 교원의 보수는 정관 제 47조에 따라 총장이 정하는 교직원보수규정에 의한다.

제38조(휴직 및 복직) ① 휴직 및 복직에 관하여는 『학교법인 의담학원 정관』 신분보장에 정한 바에 따른다.

② 휴직신청은 휴직 2월 전에 신청하고 기간 만료 직후 복직원을 제출한다.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직하지 아니한 교원은 당연 면직된다.

	교원인사 규정	문서번호		3-2-1	
		제정일		2010. 03. 01.	
		개정일		2022. 08. 31.	
		페이지	9/11	관리 부서	교무처

제39조(징계) ① 교원의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육공무원 징계사유와 정관 및 대학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
2. 대학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
3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학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

② 징계위원회는 정관에 의거 구성하며 법인에서 개최한다.

제40조(직위해제) ①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다음 기간 만료 시까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한 불량한자 : 3일 이내
2.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: 징계의결이 확정시까지
3.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: 확정 판결 시까지

②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기간 동안 대기를 명할 수 있다.

제41조(직권면직) ① 임면권자는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.

1. 건강상의 이상으로 교육공무원 근로기준에 준하는 휴직기간 내에 완치되지 아니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때
2.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근무일 기준 10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였을 때
3. 제40조 1항 1호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 된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정인 없다고 인정될 때

② 교원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42조(의원면직) ① 교원이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 한 경우 4대기관(교육부, 감사원, 경찰, 검찰)에 의원면직 제한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③ 퇴직하는 교원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.

	교원인사 규정	문서번호	3-2-1		
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개정일	2022. 08. 31.		
		페이지	10/11	관리 부서	교무처

제 5 장 보 칙

제43조(시행규칙)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을 정한다.

제44조(법령의 준용 등) 정관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은 교원 관련 제 법령을 준용한다.

부 칙

-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전임강사 명칭폐지와 관련된 사항은 2012년 7월23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.
- (경과조치) 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전임교원인사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자로 폐기한다.
② 종전 전임교원인사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-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	교원인사 규정	문서번호	3-2-1		
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개정일	2022. 08. 31.		
		페이지	11/11	관리 부서	교무처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